

수원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가단537548 판결 [공사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윤수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C와 공동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골재, 건설자재 운송 및 도소매업, 토목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2) 피고는 토목 및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 1) 원고는 C이 대리한 피고(대표이사 D)와 화성시 E 염전 19,543㎡ 등 약 26,000평을 매립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22. 12. 1.부터 2023. 4. 20.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C에게 '피고 대표이사 D은 화성시 F 매립에 관하여 피고 회사 위원장 C에게 공사 일체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4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
- 3)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사례 명목으로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 12. 2. C 명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C은 위 1억 원 중 8,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 1) 피고는 화성시 H, I, J, E, K, L, M 합계 85,965㎡ 성토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22. 11. 18.부터 2023. 4. 20.까지로 정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10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확보하였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여 C,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C, G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의 사용자인 피고는 C, G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용자인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C로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후 피고 회사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이 피고의 사내이사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작성한 매립 공사 계약서(갑 제1호증)는, 피고가 먼저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법인인감증명서(갑 제3호증), 위임장(갑 제4호증)과 함께 C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C은 위 계약서의 매립비용 란에 ‘1억 7,500만 원, 1차 1억 원, 2차 1월 15일 3,500만 원, 마감 2월 28일 4,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 회사 예금계좌가 아닌 C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도 이 사건 공사의 수주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한다는 의사로 지급한 것인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원고는 C과 G를 상대로 1억 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뿐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독촉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